

 산업통상자원부	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http://www.motie.go.kr			
2019년 6월 2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 23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9. 6. 21.(금)	담당부서	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협력담당관
담당과장	정해권 과장(043-870-5520) 김현경 직대(043-719-1592)	담당자	기현중 연구관(043-870-5523) 강진욱 연구관(043-719-1594)

정부, 수출기업 발목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나서
- 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, 7개국 12건의
규제애로 해소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'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*) 위원회 (6.17.~21.)에 참석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다.

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, 표준,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

-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·안전 인증,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 규제 28건에 대하여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,
- 그 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,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전(STC*)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.

* STC(Specific Trade Concerns) :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성이 있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

* 중국(5건) : ①네트워크안전법, ②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, ③의약품·의료기기 등록비기준, ④화장품 감독관리조례, ⑤화장품 등록검사규정
 인도(1건) : 통신규칙
 이스라엘(1건) : 화장품 규정

□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·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, 대표단은 중국·유럽연합·중동·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하여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. [상세내용 별첨]

①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.

-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①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였으며, 이를 위한 구체적인 '기밀유출 방지 문구'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하고
- 규제대상이 되는 ②핵심 정보통신인프라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, ③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.
- 또한, ④모든 수입식품에,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하였다.
-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, 규제대상 모호성,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②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하였다.

-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⑤유통채널별(인터넷판매, 광고홍보물)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하였고,
- ⑥제품정보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하여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·분쟁 위험을 해소하였다.

③ 최근 에너지효율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남미, 중동 국가들은 해외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거나 시험·인증 인프라 완비시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하기로 하였다.

- 페루는 ⑦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⑧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였다.

○ 코스타리카는 ⑨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,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하여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걸프지역표준화기구(GSO) 회원국은 ⑩유해물질 사용제한(RoHS)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제외하기로 하여 불필요한 인증부담을 해소하였다.

○ 쿠웨이트는 ⑪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.

○ 베트남은 ⑫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하여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였다.

□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,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,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○ 우선, 7월 중 수출기업, 업종별 협단체,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,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,

○ 미해결 애로 해소를 위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상 외에도 규제당사국 방문협상, 해외 규제담당자 초청행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할 계획이다.

【붙임】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(19.6월) 주요 성과(7개국 12건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중 연구관(☎ 043-870-5523), 박선영 연구사(☎ 043-870-55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(19.6월) 제기, 협의 성과 (7개국 12건)

□ 규제개선(7건)/시행유예(2건)/규정검토(3건) 등 총 12건

국가	규제명	요구사항	협의결과(기대효과)
1. 중국 (2건)	네트워크안전법	① 보안심사과정에서 IT제품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조항 마련 요청	(규정검토)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며, 향후 진행중인 하위 규정에 기업의 기밀유출방지 내용을 반영하기로 함 ⇒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 해소 기대
		② 규제대상 핵심 IT인프라시설의 명확화	(규정검토) 지정범위 및 기준 마련키로 함 ⇒ 규제대상여부 불확실성 해소 기대
		③ 국외반출이 금지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명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서 제공 요청	(규정검토) 보안심사대상 및 평가절차 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, 동 과정에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함 ⇒ 중요데이터의 모호성 해소 기대
	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	④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 시행 연기 및 제도 개선 요청	(규제개선) 당초 시행일(19.10월)을 연기(미정)하고, 국제기준에 맞게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로 함 ⇒ 과도한 규제에 따른 수출장애요인 해소
2. 유럽연합 (2건)	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규제	⑤ 유통채널별(인터넷판매, 광고홍보물)로 상이한 에너지효율 라벨 일원화 요청	(규제개선) 일원화하기로 함 ⇒ 불필요한 라벨링 비용부담 경감
		⑥ 제품정보설명서 상 의무기재사항 중 확정기재가 어려운(마지막 판매날짜, 부품 제공 기간) 항목 삭제 요청	(규제개선) 마지막 판매날짜, 부품 제공 기간을 의무기재 항목에서 삭제하기로 함 ⇒ 불필요한 논란·분쟁 위험 해소
3. 페루	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	⑦ 가전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위한 필수 인프라(지정시험소) 불비에 따른 시행유예 요청	(시행유예) 7개 품목에 대해 7~12개월 시행유예하기로 함 *일반조명 : 7개월 유예 (19.11.7일 시행) *전동기 모터 : 8개월 유예 (19.12.7일 시행) *냉장고/세탁기/건조기/공조기/가스온수기 : 12개월 유예 (20.4.7일 시행) ⇒ 인증환경 개선 및 대응 기간 확보
		⑧ 세탁기 온도시험기준 및 사후관리 허용오차 관련 규정의 명확화 요청	(규제개선) 온도시험요건(40°C/60°C)확인 - 사후관리 허용오차는 국제기준(EU)을 준용하기로 함 ⇒ 규제비용 완화 기대
4. 코스타리카	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	⑨ 냉장고 에너지효율규제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확대 요청	(규제개선) 기 취득한 멕시코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기로 함 ⇒ 추가적인 인증부담이 경감됨
5. 걸프지역 표준화기구 (GSO)	유해물질 사용제한규제	⑩ 유해물질 사용제한(RoHS)규제에 건설 장비용 차량 배제요청	(규제개선) 도로주행용이 아닌 건설 장비 차량은 적용제외하기로 함 ⇒ 과도한 규제 적용 범위 조정으로 불필요한 인증부담 해소
6. 쿠웨이트	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	⑪ 규제 시행일 기준판매일 통관일을 통관일로 요청	(규제개선) 통관일 기준임을 확인 ⇒ 통관된 재고제품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
7. 베트남	타이어 품질인증	⑫ 인증서 발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혼란해소를 위해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요청	(시행유예) 기존 유럽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함 ⇒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